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분쟁에서 자기책임의 원칙 쟁점 관련 판결 사례



1. 순차적 진행단계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 연구단계 담당 주관기관 실패와 후행 연구단

계 회사의 책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판결

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소송 대상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진행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단위 추진 계획(아래 숫자는 개발기간 대비 월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세 설계(Under Frame, Side Panel, Roof Panel, End Panel 및 하부 강도부재)	■	■	■	■								
압출 성형 해석(Sole bar, Cant rail 등)		■	■	■	■	■						
정밀 압출 금형 설계 및 제작			■	■	■	■						
압출재 제작 및 소재 특성 평가(3량)						■	■	■	■	■	■	

원고 회사가 담당하는 과제내용은 '압출재 상세설계 확정, 압출 성형 해석, 압출 금형 설계 및 제작, 압출재 제작 및 소재 특성 평가'입니다. 이는 전단계의 압출재 상세 설계 및 관련 단면도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회사는 협약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단면도 일부를 제공 받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상세설계 및 금형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완수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불성실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회사는 전 단계 담당 연구기관의 책임으로 최종 불성실 실패로 판정되었다고 해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귀책 사유 없는 부분까지 실패 책임을 물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 기본 법리

나)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등에서 '귀책사유' 등의 문구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책임원칙은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에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도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제제는 그 자체로 법치주의 위반으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등에도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구체적 판단

② 위 압출재는 모두 D 차체의 구성품으로서, 원고 회사의 2차년도 과제 수행과 관련한 G 및 원고 회사의 협업은 '차체 등 단면도 제작(G) → 압출재 상세 설계(원고 회사) → 협의 및 수정을 통한 압출재 상세 설계 승인(G) → 압출재 금형 설계, 제작(원고 회사) → 압출재 시제품 생산 및 소재 특성 평가(원고 회사)'의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과제 중단 시점까지 수행과제 중 일정 부분을 수행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G의 차체 등 관련 단면도 제공 지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과제 실패에 관한 책임을 원고들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9억8천5백만원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 + 3년간 참여제한처분 취소

2. 순차적 진행단계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 연구단계 담당 주관기관의 결과실

패와 연결된 후행 연구단계 담당 참여기관의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누78167 판결

소송의 대상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진행이 아니라 순차적 진행이 필수적 요소입니다. 먼저 주관기관에서 1,2단계를 담당하면서 전체를 총괄하고, 참여기관 A 대학이 3번째 “세포수준 (in vitro) 독성 및 생리활성 확인” 단계를, 참여기관 B 대학(원고)는 4번째 “마우스 모델 이용 활성평가 (in vivo)” 단계와 5번째 “반려견 임상실험 및 기호성 평가” 단계를 각 담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별개의 선행연구에서 주관기관이 개발한 천연허브 발효물이 어느 정도 세포수준에서의 항염증 활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 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기관 원고가 담당했던 역할은, 주관기관이 개발한 발효물을 가지고 “마우스 모델 이용 활성평가(in vivo)” 시험을 통해 그 효능을 확인한 후(위 4번째 단계 연구), 나아가 “반려견 임상시험 및 기호성 평가”(위 5번째 단계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과제의 진행 중 예상과 달리 기대하였던 항염증 효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1차년도 연구에서 원고가 수행한 동물실험에서 발효물의 항염증 효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후행 연구단계를 담당하는 참여기관의 책임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기관의 책임을 냉정하게 묻는 입장입니다.

가) 원고의 주장

① 주관기관인 C가 사료첨가제 개발을 위한 핵심 원료물질을 개발하고, 원고는 참여기관으로서 개발된 원료물질의 활성만을 평가하는 것인데, 과제 수행 결과가 미흡한 것은 주관기관이 개발한 원료물질의 효능이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

② 원고가 2차년도 사업계획서에서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L'를 2차년도 협약기간 내에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주관기관이 실험을 위한 사료를 늦게 공급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계획에 정해진 바에 따라 면역 및 항염 활성 평가를 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할 협약상의 의무가 있다. 주관기관이 개발한 원료물질의 효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여기관의 위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약 변경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항당뇨 및 항비만 활성 평가로 과제 수행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원고는 과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과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여기관의 책임자로서 협약 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목표 미달성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책과제,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